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규정 〉
■ 복기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292호)

2024.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임 명 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1
III. 주요내용	2
IV. 총괄 검토	5
1. 제정안의 발의 배경	5
2. 제정안의 체계	8
3. 총괄 검토의견	9
V. 주요 항목별 검토	11
1. 제1장 총칙	11
가. 목적, 정의 및 국가 등의 책무(안 제1조·제2조·제3조)	11
나.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국가연구데이터 관련 권리 보호(안 제4조·제5조)	15
2. 제2장 국가연구데이터 정책의 추진체계	17
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안 제6조·제7조)	17
나. 국가연구데이터위원회 및 국가연구데이터센터(제8조·제9조)	20
다. 실태조사 및 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안 제10조·제11조)	24
3. 제3장 국가연구데이터의 등록 및 관리	27
가. 국가연구데이터의 생산 및 관리, 등록 및 공개, 표준화, 품질관리, 보안대책(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27

4. 제4장 국가연구데이터의 공유 및 활용 촉진	32
가. 국가연구데이터 공유, 활용촉진 및 기술개발·산업 지원(안 제17조·제18조·제19조)	32
나. 국가연구데이터 인식개선,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촉진(제20조·제21조·제22조)	35
5. 제5장 보칙	37
가. 비밀유지의무 및 권한의 위임·위탁·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별칙(안 제23조·제24조·제25조·제26조)	37
6. 부칙	39
가. 시행일(안 부칙)	39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복기왕의원 등 23인

나. 발 의 일 : 2024. 7. 2.

다. 회 부 일 : 2024. 7. 3.

II. 제안이유

연구성과뿐만 아니라 연구 과정을 개방하는 오픈 사이언스 정책이 세계적인 추세임. 천문, 항공, 우주, 유전자 등 첨단 분야에서 실험 장비가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연구실험데이터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양질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이를 공개·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플랫폼의 구축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음.

미국, 영국, EU 등 주요 선진국들은 공적자금을 투입한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 과정에서 생성된 연구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연구데이터를 국가 중요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우리나라도 2018년 국가연구데이터 공유·활용전략을 수립하고, 2019년 연구데이터관리계획(DMP) 시범 적용,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DataON) 구축 등 연구데이터 정책을 추진해왔음.

그러나 국가연구데이터 관리에 대한 근거가 지침(공동관리규정)으로만 존재하고 있을 뿐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이렇다 보니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생산된 수많은 연구데이터들이 연구 종료 후 활용되지 못하거나 연구자 개인 차원에서 관리하는 수준에 머

물려 있음. 그 정확한 규모마저 확인되지 못한 채 연구데이터가 잊히거나 소실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국가적 손실임.

국가자산이자 과학기술의 원천인 연구데이터가 과학자들의 후속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러므로 범정부 차원에서 연구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개방형 연구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정법 마련이 필요한 것임.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앞으로 심화 될 연구인력난을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연구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연구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국가연구데이터 공유활용체계를 조속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연구데이터센터, 전문연구데이터센터를 비롯한 각 연구개발기관에서 국가연구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추진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더불어 국가연구데이터 공개원칙, 표준화, 품질관리, 보안관리, 활용촉진, 연구자 권리보호, 전문인력 양성 등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규정들을 함께 마련함으로써 수많은 연구데이터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보존되고 연구자와 연구기관 간 데이터 공유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이바지하려는 것임.

III.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데이터는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자로부터 그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자의 국가연구데이터 성과를 적절히 보호·관리하여야 하고, 연구자는 그 데이터를 통해 발생한 가치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과

평가를 받을 권리를 갖도록 함(안 제5조).

나. 정부는 3년 단위의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차별 국가연구데이터 관리·활용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국가연구데이터의 통합적인 관리와 상호 연계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국가연구데이터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라. 국가연구데이터센터는 국가연구데이터의 효율적인 등록·관리·제공·연계 및 공동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전문연구데이터센터는 소관 분야의 국가연구데이터의 효율적 제공·연계 및 공동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연구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11조).

마. 국가연구데이터는 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 또는 전문연구데이터 플랫폼에 등록하고 이를 일반에 공개해야 하며, 비공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비공개 기간 동안 국가연구데이터의 등록 및 공개를 유보할 수 있으며, 비공개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즉시 국가연구데이터를 등록 및 공개하도록 함(안 제13조).

바. 국가연구데이터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그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연구데이터의 품질관리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사. 보안이 요구되는 국가연구데이터에 대해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별도로 분류하여 필요한 보안관리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6조).

아. 국가연구데이터의 상호 제공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

하고, 국가연구데이터의 중요성, 권리 보호의 필요성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20조).

자.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인력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전문기관에 관련 교육훈련을 시행하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IV. 총괄 검토

1. 제정안의 발의 배경

현재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연구데이터 관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9조제1항¹⁾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인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현행 규정상에서 연구개발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데이터관리계획(Data Management Plan; DMP)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연구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음.²⁾

또한, 체계적인 연구데이터 관리를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기관 고유사업으로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DataON)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을 수행 중임.³⁾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으로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9조(연구개발정보의 처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개발정보의 처리(연구개발정보를 수집·생산·관리 및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기준(이하 “정보처리기준”이라 한다)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처리 대상 연구개발정보의 범위, 처리 시기·방법, 절차
2. 처리 대상 연구개발정보별 정보 처리 주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제23조(연구데이터의 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과제에 한하여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참여하려는 자에게 데이터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과제협약 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 데이터관리계획에 따른 연구데이터 생산·보존·관리의 충실성 및 공동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은 데이터관리계획에 따라 소관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연구데이터를 관리하고, 그 결과를 최종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데이터의 생산·보존·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3) 현재 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기관 고유사업으로 수행 중인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DataON) 구축·운영 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음.

는 범정부 차원에서 연구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연구데이터 공유·활용체계를 구축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음.⁴⁾

이에 제정안은 연구데이터 관리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범정부 차원에서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이를 공개·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후속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으로 보임.

참고로, 주요 국가(미국, 영국, 유럽연합 등)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적 지원에 의해 수행된 연구 과정에서 생산된 연구데이터의 공유·활용을 위한 정책과 인프라 구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주요국의 연구데이터 정책 동향 >

구분	계획명	정책유형 (상,하향식)	주관기관	시행 기간	특징
미국	공공액세스 메모	행정명령 (하향식)	대통령 직속 OSTP	2013~	○ 연방정부 지원기관사업의 데이터관리계획(DMP) 도입
영국	연구데이터 정책 공동원칙	권고지침 (상향식)	영국연구회(UKRI) 와 유관기관	2015~	○ 공공연구데이터의 접근 제한 최소화 및 체계적 데이터 관리
유럽 연합	Horizon 2000 오픈연구데이터 시범사업	사업규정 (하향식)	유럽연합 연구혁신총국	2014~ 2020	○ 오픈연구데이터 시범사업 (ORDP) 시행 및 데이터관리계획 도입

(단위: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DataON 구축·운영예산	4,692	3,514	3,793	4,948

4) 출연연·과기원 연구데이터 관리 실태 관련 정필모의원실 보도자료(2023.10.2.)에 따르면, R&D 연구데이터저장소인 리포지터리(repository)를 구축한 기관은 4대 과기원 중 한국과학기술원(KAIST)가 유일했고, 25개 출연연 중 17개임. 또한, 다수 기관이 리포지터리를 구축하더라도 이를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DataON)에 연계한 곳은 더욱 적었는데, 5개의 출연연(한국천문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의학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만이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DataON)과 연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국가오픈사이언스 계획	행정제도 (하향식)	총리 직속 디지털담당정부 차관	2014~	○ 정부 및 공공기관 데이터 공개 규정 마련 ○ 공공자금 50%이상 투입 연구 데이터의 개방 권고 ○ 공익 관련 민간데이터 개방 권고
네덜란드	국가오픈사이언스 계획	민관합동 전략 (상향식)	NWO 등 개별연구기관	2017~ 2028	○ 2020년까지 오픈사이언스 로드맵 채택 ○ 2028년까지 오픈사이언스 지표 채택
호주	연구데이터 호주(RDA) 계획	정책 (상향식)	교육부 NCRIS 담당	2012~	○ 국가차원의 연구데이터 검색 플랫폼 서비스 제공 ○ 연구데이터 관리 지침 및 교육·훈련 제공

자료: 공공부문 연구데이터의 소유·활용제도 개선방향, 2019,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 제정안의 체계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국가연구데이터 관련 권리의 보호 등
제2장 국가연구데이터 정책의 추진체계	제6조 기본계획
	제7조 시행계획
	제8조 국가연구데이터위원회
	제9조 국가연구데이터센터
	제10조 실태조사
	제11조 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 및 운영 등
제3장 국가연구데이터 의 등록 및 관리	제12조 국가연구데이터의 생산 및 관리
	제13조 국가연구데이터의 등록 및 공개
	제14조 국가연구데이터의 표준화 등
	제15조 국가연구데이터의 품질관리
	제16조 국가연구데이터의 보안대책
제4장 국가연구데이터 의 공유 및 활용 촉진	제17조 국가연구데이터의 개방 및 공유원칙
	제18조 국가연구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 촉진
	제19조 국가연구데이터 기술개발 및 산업 지원
	제20조 국가연구데이터에 관한 인식개선 및 제도정비
	제21조 전문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제22조 국제협력 촉진 등
제5장 보칙	제23조 비밀유지의무
	제24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2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6조 벌칙

3. 총괄 검토의견

제정안은 “국가연구데이터”,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에 관한 계획”에 관하여 정의하고 “국가연구데이터위원회”, “국가연구데이터센터”,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국가연구데이터의 생산 및 관리, 표준화, 품질관리, 보안대책” 등을 규정하여 연구데이터 공유의 원칙을 규정하고 개방형 연구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정법 마련을 내용으로 함.

제정안은 연구데이터 관리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서 규정하여 국가 자산이자 과학기술의 원천인 양질의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이를 공개·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과학자들의 후속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제정안의 심의에 있어 다음의 사항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모든 국가연구데이터를 개방과 공유가 원칙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공공자금을 지원받아 수행된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연구데이터라 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와 같이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공개할 경우 「저작권법」상의 저작권, 「특허법」상의 특허권과 같이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게 인정되는 배타적 성격을 가지는 지식재산권과 충돌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임.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과제비에 국가 예산이 매칭되는 비율은 과제

마다 상이할 것인데 그에 대한 고려없이 모든 국가연구데이터에 대해 개방과 공유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연구데이터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관리와 이를 공개·공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을 통해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해외 주요국⁵⁾의 연구데이터 관리 체계를 검토해보면, 연구데이터 관리를 법률을 통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셋째, 2024년 8월 12일 기준 제정안뿐만 아니라 동일 제명의 제명한 1건⁶⁾과 국가연구데이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5건⁷⁾이 우리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국가연구데이터에 관한 사항을 규율 내용으로 하고 있는 법률안들을 병합심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5) 미국, 영국, 유럽연합,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

6) [의안번호 2201396]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1인)

7) [의안번호 2201293]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9인)

[의안번호 2201294]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9인)

[의안번호 2201295]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9인)

[의안번호 220129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9인)

[의안번호 2201297]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9인)

V. 주요 항목별 검토

1. 제1장 총칙

가. 목적, 정의 및 국가 등의 책무(안 제1조·제2조·제3조)

1) 제정안의 내용

안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고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는 국가, 연구개발기관, 연구자 및 국가연구데이터 이용자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데이터 기반의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국가연구데이터의 공유 및 확산을 촉진하여 국가혁신역량을 제고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 및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연구개발과제”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4. “국가연구데이터”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관찰, 실험, 조사, 수집 등으로 취득하거나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등을 통하여 생성된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5. “국가연구데이터생산자”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로서 국가연구데이터의 생성·가공·제작 등과 관련된 일련의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국가연구데이터가 공공의 연구자산으로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생산·관리 및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인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국가연구데이터를 등록·공개하여 국가연구데이터가 연구자 상호 간에 원활하게 공유·확산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국가연구데이터를 생산한 소속 연구자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는 국가연구데이터를 충실히 수집·생성·가공하여 생산하고, 소속 연구개발기관이 이를 원활하게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편집·처리·제공하여야 한다.

④ 국가연구데이터의 이용자는 국가연구데이터의 취득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원칙과 윤리를 준수하고, 국가연구데이터에 관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2) 검토의견

안 제1조는 동 제정법률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요약한 것이고, 안 제2조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기관”, “국가연구데이터”, “국가연구데이터생산자”에 대하여 정의

하고 있으며, 안 제3조는 국가연구데이터에 관한 국가, 연구개발기관, 연구자 및 국가연구데이터 이용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안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국가연구발사업”, “연구개발 과제”, “연구개발기관”의 정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의 정의와 동일하게 규정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데,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의 정의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제정안과 같이 규정할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제아목에서 “연구개발기관”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를 포함하고 있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개정할 경우 안 제2조제3호제아목의 위임에 따른 시행령 역시 개정되어야 할 것임.

둘째, 안 제2조제4호의 “국가연구데이터” 정의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의 “데이터”⁹⁾의 정의를 참고

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연구개발과제”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선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9)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한 것으로 보이는데, “국가연구데이터”, “공공데이터”, “민간데이터”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정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안 제3조제2항에서는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국가연구데이터를 등록·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연구데이터 안에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와 같이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공개할 경우 「저작권법」상의 저작권, 「특허법」상의 특허권과 같이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게 인정되는 배타적 성격을 가지는 지식재산권과 충돌되는 경우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관찰, 실험, 조사, 수집 등으로 취득하거나 정보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등을 통하여 생성된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나.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국가연구데이터 관련 권리 보호(안 제4조·제5조)

1) 제정안의 내용

안 제4조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고, 제5조는 국가연구데이터에 대한 권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국가연구데이터 관련 권리의 보호 등) ① 국가연구데이터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국가연구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협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자로부터 국가연구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를 국가연구데이터생산자로 표시하는 등 연구자의 국가연구데이터 생산에 대한 성과를 적절히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가연구데이터생산자는 자신이 생성 또는 가공한 국가연구데이터의 사용·수익 등으로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가치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과 평가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④ 연구개발기관 등으로부터 국가연구데이터를 제공받거나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데이터통합플랫폼 등을 통하여 국가연구데이터를 취득하여 활용하는 자는 해당 국가연구데이터의 출처와 이용내역을 이용조건에 따라 표시하거나 공개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활용 등에 관한 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나 연구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해당 성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2) 검토의견

안 제4조는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이 법이 일반법의 지위를 가짐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5조는 국가연구데이터에 대한 권리는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승계하고 그에 관한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안 제4조에서는 이 법이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일반법의 지위를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안 제2조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국가연구데이터”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상의 “데이터”와 중복되는 영역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상의 “데이터”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함.

2. 제2장 국가연구데이터 정책의 추진체계

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안 제6조·제7조)

1) 제정안의 내용

안 제7조는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8조는 기본계획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6조(기본계획) ① 정부는 국가연구데이터의 공유 및 확산을 촉진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국가연구데이터의 생산,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 3. 국가연구데이터의 공개, 확산 및 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국가연구데이터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국가연구데이터 기반 연구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 6. 국가연구데이터 관련 국제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7.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운영되는 국가연구데이터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활용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제8조에 따른 국가연구데이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등 데이터에 관련된 국가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시행계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제8조에 따른 국가연구데이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검토의견

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안 제6조제4항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등 데이터에 관련된 국가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4조¹⁰⁾에 따른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과도 연계가 필요한 점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함.

둘째, 안 제7조제3항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어떤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

10)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4조(기본계획) ① 정부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음.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어떠한 자료를 요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나. 국가연구데이터위원회 및 국가연구데이터센터(제8조·제9조)

1) 제정안의 내용

안 제8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연구데이터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제9조는 국가연구데이터센터의 지정·운영에 대해 규정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8조(국가연구데이터위원회) ①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연구데이터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가연구데이터 진흥 정책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운영되는 국가연구데이터 진흥 관련 계획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집행실적의 평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5.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가연구데이터의 비공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과 국가연구데이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국가연구데이터센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국가연구데이터의 통합적인 관리와 상호 연계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국가연구데이터센터(이하 “국가연구데이터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연구데이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2. 국가연구데이터 현황의 종합적인 분석 및 제공
 3. 국가연구데이터와 관련된 자동화시스템의 설계·개발·구축 및 관리
 4.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표준화 기술 등의 개발 및 지원
 5. 연구개발기관의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교육 지원
 6. 국내외 국가연구데이터 유관 기관·단체와의 협력
 7. 그 밖에 국가연구데이터의 통합적 관리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데이터와 관련된 기관·단체의 장에게 국가연구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관 분야의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연구데이터센터(이하 “전문연구데이터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1. 소관 분야의 국가연구데이터 등록·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데이터 플랫폼의 구축과 운영
 3. 그 밖에 소관 분야의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데이터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연구데이터센터를 국가연구데이터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⑥ 정부는 국가연구데이터센터와 전문연구데이터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⑦ 그밖에 국가연구데이터센터와 전문연구데이터센터의 지정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검토의견

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첫째, 제8조에서는 국가연구데이터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의 임기와 연임 가능 여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해석상 다툼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

와 연임에 대한 사항은 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¹¹⁾

둘째, 안 8조의 “국가연구데이터위원회”는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자문위원회로, 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소속으로 신설하 기보다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¹²⁾의 전문위원회 형태로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¹³⁾

11) 참고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서는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위원의 임기와 연임에 관한 사항을 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음.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6조(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①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데이터산업 진흥 정책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운영되는 데이터산업 진흥 관련 계획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집행실적의 평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금융위원회 위원장·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2. 데이터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2)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6조(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①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데이터산업 진흥 정책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운영되는 데이터산업 진흥 관련 계획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집행실적의 평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셋째, 안 제9조제3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연구데이터와 관련된 기관·단체의 장에게 어떤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떤 요청을 할 수 있는지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넷째, 안 제9조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운영하는 “국가연구데이터센터”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운영하는 “전문연구데이터센터”를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효율성 측면에서 “국가연구데이터센터”와 “전문연구데이터센터”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해보임.

국가연구데이터는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보 공유의 측면에서는 중앙행정기관 단위가 아닌 정부 단위의 하나의 국가연구데이터센터로 지정·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 실태조사 및 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안 제10조·제11조)

1) 제정안의 내용

안 제10조는 국가연구데이터의 생산·관리 및 활용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를 규정하고 있고, 제11조는 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10조(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고 이 법에 따른 시책 및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국가연구데이터의 생산·관리 및 활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기관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 및 운영 등) ① 국가연구데이터센터는 국가연구데이터의 효율적인 등록·관리 및 공동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자적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이하 “통합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문연구데이터센터는 소관 분야의 국가연구데이터의 효율적인 제공·연계 및 공동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자적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연구데이터 플랫폼(이하 “전문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통합플랫폼은 전문플랫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정보시스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스템과 상호 연계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전문연구데이터센터는 통합플랫폼의 효과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플랫폼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국가연구데이터센터 및 전문연구데이터센터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통합플랫폼 및 전문플랫폼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검토의견

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국가연구데이터”는 “데이터”의 한 분야라는 점에서 안 제10조의 실태조사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7조14)의 실태조사가 중복되는 면이 있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상의 실태조사 역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14)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7조(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 거래 및 활용 기반 산업을 촉진하고, 이 법에 따른 시책 및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데이터 산업 기반 및 데이터 대상 거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공공데이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사업자나 그 밖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한 기본법」에 따른 실태조사로도 안 제10조의 입법취지 달성이 가능한 면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해보임. 특히, 실태조사는 자료 요청에 따르는 의무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데이터사업자나 그 밖에 기관이나 단체에도 발생하게 된다는 점에서 권력적 사실행위의 성격이 강하므로 입법 취지 달성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둘째, 안 제11조에서는 국가연구데이터센터에서 구축·운영하는 “통합플랫폼”과 전문연구데이터센터에서 구축·운영하는 “전문플랫폼”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안 제9조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정보공유의 측면에서는 국가 차원의 하나의 플랫폼으로 구축·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보임.

참고로, 현재 정부에서는 체계적인 연구데이터 관리를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기관 고유사업으로 하나의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DataON)을 구축·운영하고 있는데,¹⁵⁾ 통합플랫폼과 전문플랫폼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효율적일지 검토가 필요해보임.

15) 현재 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기관 고유사업으로 수행 중인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DataON) 구축·운영 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DataON 구축·운영예산	4,692	3,514	3,793	4,948

3. 제3장 국가연구데이터의 등록 및 관리

가. 국가연구데이터의 생산 및 관리, 등록 및 공개, 표준화, 품질관리, 보안대책(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1) 제정안의 내용

안 제12조는 연구개발기관의 연구데이터관리계획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13조는 연구개발기관이 국가연구데이터를 통합플랫폼 또는 전문플랫폼에 등록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제14조는 국가연구데이터의 호환성 제고를 위한 표준화에 관한 사항을, 제15조는 국가연구데이터의 품질향상을 위한 시책 마련에 관한 사항을, 제16조는 국가연구데이터의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12조(국가연구데이터의 생산 및 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거나 수행하려는 연구개발기관에게 해당 국가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취득·생산되는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연구데이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연구데이터관리계획을 고려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연구데이터관리계획을 제출한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연구데이터관리계획에 따라 연구데이터를 생산·보존 및 관리하고, 그 결과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최종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국가연구데이터의 등록 및 공개) ① 연구개발기관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국가연구데이터를 통합플랫폼 또는 전문플랫폼에 등록하고 이를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로 지정되는 등 비공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국가연구데이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공개 기간 동안 국가연구데이터의 등록 및 공개를 유보할 수 있으며, 비공개 기간이 종료되면 즉시 국가연구데이터를 등록 및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데이터의 등록 및 공개의 절차와 방법, 제2항에 따른 비공개 사유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국가연구데이터의 표준화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데이터의 호환성 및 활용성 제고,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 간 협력 증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관련 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국가연구데이터의 생산 및 관리 방식에 관한 사항
2. 국가연구데이터의 공유 및 공동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화가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화를 위한 조사·연구·개발 등 표준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기관 및 국가연구데이터생산자 등은 제1항에 따라 제정된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표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데이터의 표준과 관련된 국제표준기구와 협력체계를 유지 및 강화하고 학술 및 기술교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국가연구데이터의 품질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데이터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국가연구데이터 품질 진단 기준
2. 국가연구데이터 품질 평가 방법 및 체계
3. 국가연구데이터 품질 인증

4. 그 밖에 국가연구데이터 품질관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의뢰하고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국가연구데이터의 보안대책)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국가연구데이터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거나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보안이 요구되는 국가연구데이터는 별도로 분류하여 필요한 보안관리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 수립·시행 실태 및 제2항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내용, 제2항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 제3항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 점검 및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검토의견

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안 제14조(국가연구데이터의 표준화)와 제15조(국가연구데이터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데이터 중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의 “공공데이터”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의 “데이터”와 중복되는 영역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각 법률에서도 표준화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¹⁶⁾ 「

16)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표준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데이터 표준과 관련된 사항이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은 해당 법률을 따르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5항¹⁷⁾에서는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거나 국가안보를 위하여 보안이 필요한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하는 업무 중 일부를 국가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보안과제로 지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국가연구데이터는 안 제16조에 따른 보안대책 수립·시행 대상이 될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
1. 공공데이터의 제공형태 및 제공기술
 2.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분류체계
 3.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2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절한 품질수준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데이터기반행정 표준화)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표준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사항이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데이터 분석등의 절차 및 방법
2. 메타데이터의 관리 방법
3.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7)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연구개발성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거나 국가안보를 위하여 보안이 필요한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은 보안교육 실시, 보안책임자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관리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수립·시행 실태 및 제3항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업무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내용, 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의 분류 기준, 제3항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 점검 및 조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로 보이는데, 보완과제 대상 중 국가정보원에 위탁되어 수행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국가연구데이터의 보안대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연구기관의 장이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제4장 국가연구데이터의 공유 및 활용 촉진

가. 국가연구데이터 공유, 활용촉진 및 기술개발·산업 지원(안 제17조·제18조·제19조)

1) 제정안의 내용

안 제17조는 국가연구데이터는 적극적인 개방 및 공유가 원칙임을 규정하고, 안 제18조는 국가연구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19조는 국가연구데이터에 관한 기술개발 및 산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17조(국가연구데이터의 개방 및 공유원칙) ① 모든 국가연구데이터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개방 및 공유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데이터를 개방 또는 공유하는 경우에는 누구나 용이하게 해당 국가연구데이터의 보유·관리 기관을 파악할 수 있고, 해당 국가연구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하며, 이용 목적에 따라 상호 운용 및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국가연구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 촉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기관 또는 국가연구데이터생산자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연구개발기관 등에게 해당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국가연구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국가연구데이터 기술개발 및 산업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데이터에 관한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데이터를 활용하는 산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데이터에 관한 기술개발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연구데이터 활용 산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검토의견

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안 제17조제1항은 모든 국가연구데이터를 원칙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공자금을 지원받아 수행된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연구데이터라 하더라도 그 성격상 개방과 공개를 할 경우 공개할 경우 「저작권법」상의 저작권, 「특허법」상의 특허권과 같이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게 인정되는 배타적 성격을 가지는 지식재산권과 충돌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¹⁸⁾

따라서, 개방과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국가연구데이터의 범위를 한정할 필요는 없는지에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안 제19조제2항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연구데이터를 활용하는 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과학기술

18) 예를 들어, 연구개발성과가 특정 기술에 대한 특허인 경우 기술에 대한 정보가 연구데이터에 해당되어 공개되어 버린다면,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게는 성과 소유의 의미가 없을 것임.

정보통신부 소관인지 다소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보임. 산업통상
자원부장관과 협의가 필요한 측면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임.¹⁹⁾

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르면 “연구산업 육성·지원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으로 하고 있으나, 통상 산업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담당하고 있고 연구데이터 산업의 범위에 대한 이견도 있을 수 있음.

나. 국가연구데이터 인식개선,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촉진 (제20조·제21조·제22조)

1) 제정안의 내용

안 제20조는 국가연구데이터의 중요성, 재산적 가치 및 권리 보호의 필요성 등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1조는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22조는 국가연구데이터에 관한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20조(국가연구데이터에 관한 인식개선 및 제도정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데이터의 중요성, 재산적 가치 및 권리 보호의 필요성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국가연구데이터가 효율적으로 생산·관리 및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제21조(전문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① 정부는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인력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데이터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관련 교육·훈련을 시행하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국제협력 촉진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데이터에 관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전문인력의 교류 및 공동연구 등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데이터에 관한 국제교류를 효율적으

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연구데이터센터 및 전문데이터센터에게 관련 네트워크의 구축 등 국제협력 관련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검토의견

첫째, 안 제21조의 전문인력의 의미가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을 의미하는 것인지 국가연구데이터 표준화를 보조하는 인력을 의미하는 것인지 등 불분명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둘째, 안 제22조제2항의 “국가연구데이터에 관한 국제교류”의 의미가 문언상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만약 각 국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데이터 상호교환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보유·관리하는 연구데이터의 범위를 확장하려는 목적이라면 그 취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5. 제5장 보칙

가. 비밀유지의무 및 권한의 위임·위탁(안 제23조·제24조·제25조·제26조)

1) 제정안의 내용

안 제23조는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4조는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25조는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6조는 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23조(비밀유지의무)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8조에 따른 국가연구데이터위원회의 업무 2. 제9조에 따른 국가연구데이터센터 및 전문연구데이터센터의 업무 3. 제24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 제2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연구개발데이터의 생산·활용 등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조에 따른 국가연구데이터위원회 위원 및 제24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6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검토의견

안 제26조에서는 제2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유사 입법례인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²⁰⁾을 참고할 때 적절하다고 보임.

20)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47조(벌칙) 제4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그 비밀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부칙

가. 시행일(안 부칙)

1) 제정안의 내용

안 부칙은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음.

안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검토의견

동 제정안은 하위 법령의 제정이 필요하므로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다만,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인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에 근거하여 일부 연구기관에 의해 “국가연구데이터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므로 적용례 부칙을 통해 현재 수립 중인 국가연구데이터관리계획과 동 제정안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229